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도로안전시설에 방호울타리를 추가하고,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 방호울타리 등의 보행자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
(안 제2조 및 제54조제2항)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